

제출자	고시 개정안 의견	검토내용
전자공청회 반대의견 (개인)	① 납품업자 입장에서 개정된 사안 이고, 전자파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, 제조공장간의 불평등한 규제 조건 등의 사유로 반대 - 제조사는 인증받은 전자파적합 등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 요구 하는데, 이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사안임 - 실제 출입통제가 되는 공간은 더욱 전자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간일 수 있고, 전자파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제품 오동작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-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조공장간의 불평등한 규제 조건이 생성될 수 있음	○ (불수용) 개정안은 반도체 등 산업용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는 것으로 납품업자 입장에서 개정되는 사안이 아님 - 또한, 출입이 통제되는 제한된 공간은 외부와 전자파 혼간섭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, 사용 목적을 한정하여 면제하는 것이며, - 제조사가 전자파로 인한 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업자에게 요청하여 사용하면 됨
전자공청회 반대의견 (개인)	② 유통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에 '면제승인번호'는 무엇이며, 유통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부내용이 누락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어 반대	○ (불수용)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, 제품명, 모델명, 제조번호, 제조·수입현황, 판매·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하도록 자체 관리하여 요건면제 사항 이행신고시 제출 ※ 면제승인번호는 수입품 면제신청 승인완료시 자동부여되는 번호
전자공청회 반대의견 (개인)	⑥ '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'항목은 고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비교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- [별표1] 제11호 비교의 4호마목*에 이미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*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단순 조명기능의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	○ (불수용) [별표1] 제11호 비교의 4호마목에 직류전원만을 기자재로 동작하는 기자재도 포함할 경우 제11호 너목1)의 기자재 모두가 대상 제외로 될 수 있어 제11호 라목4)에 해당내용을 추가한 것임 - 개정안은 USB 전원과 유사한 직류 전원으로 동작하고 단순 조명기능의 기타 조명기구에 대해서도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